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2015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감사담당관

(2016. 6. 22)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2015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1. 안 건 명

- 2015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5월 10일(화)
- 제출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16년 6월 7일(화)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검토보고]

2015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1. 일반회계 세입결산 집행현황

(단위 : 원)

예산과목	2015회계연도			
	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 고
계	28,370	28,370	0	
일반회계	28,370	28,370	0	

2.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예산현액 대 비	
					집행율	불용율
합 계	214,596,000	193,632,810	0	20,963,190	90.2%	9.8%
감사담당관	214,596,000	193,632,810	0	20,963,190	90.2%	9.8%

(1) 개 요

- 예 산 액 : 2억 1,459만 6천원 [예산현액 : 2억 1,459만 6천원]
- 지 출 액 : 1억 9,363만 2,810원
- 집행잔액 : 2,096만 3,190원 - 불 용 율 9.8% (전년도 7.7%)

(마포구 일반회계 2015년 불용비율 9.8%)

3.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원)

부 서 명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 비 비
합 계	20,963,190	0	0	20,963,190	0	0
감사담당관	20,963,190	0	0	20,963,190	0	0

(1) 집행잔액 사유별 구분

○ 집행 잔액 : 2,096만 3,190원 - 불용율 9.8%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 2,096만 3,190원

3.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원)

부서	단위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불용 비율(%)
감사담당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기타보상금)	1,000,000	392,000	608,000	60.8%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포상금)	1,500,000	1,000,000	500,000	33.3%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무관리비)	2,940,000	1,452,500	1,487,500	50.6%
	옴부즈만 운영(사무관리비)	32,100,000	17,122,310	14,977,690	46.7%

[검토의견]

<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

-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2만 6천 370원이며, 수납액은 2만 6천 37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입 내용은 이자수입 등임
-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2억 1,459만 6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1억 9,363만 2,810원이 지출되었고, 예산 현액 대비 약 9.8%에 해당하는 2,096만 3,1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전년도의 7.7%와 대비하면 불용액 발생비율에 있어서 2.1% 증가하였음.
- 집행 잔액(불용액) 2,096만 3,190원에 대한 발생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096만 3,190원이 되겠음.
- 일반회계 세출결산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 1)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의 부

조리를 구에 신고한 자(민간인)에게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2015년도 부조리 민원신고가 없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다만 마포구 부조리 사전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행정과('15.5.21) 및 청소행정과('15.7.13) 종합감사에 따른 주민참여 현장 감사단 자원봉사 실비로 39만 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60만 8천원이 남았음

< 보상금 지급기준(조례 제8조 관련 [별표])>

구분 번호	지 급 기 준	보상금
1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만원 이내
2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50만원 이내
3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발전 또는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20만원 이내 최저 10만원

2)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에 따른 보상금 150만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조리를 구 감사부서에 신고한 자(공무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마포구 공직윤리 마일리지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만원은 2015년도 공무원 신고접수 내역이 없어 집행잔액이 남았음

< 공직자 윤리 마일리지 포상금 지급내역 >

- 최우수(20만원) : 교통행정과, 서강동
- 우수(2×15만원) : 세무1과, 상암동
- 장려(3×10만원) : 문화관광과, 환경과, 신수동

3)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294만원은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에도 인권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함에 따라 수당을 미지급하여 148만 7,500원이 남았음

< 구민 인권보호 위원회 구성 불가 사유>

- 2014년부터 시작된 일부 인권·시민단체의 성소수자 문제 정치

쟁점화 시도로, 서울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대다수 지자체에서도 상호 이해 당사자 간 갈등과 충돌로 마포구 인권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2016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음.

<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지급내역 >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 내역	집행 잔액 발생 사유
계	2,940,000	1,452,500	1,487,500		
인권보호 및 증진위원회 수당	1,120,000	0	1,120,000	※ 위원회 미개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직원인권교육 강사 수당	500,000	370,000	130,000	강사료 370,000원(91명)	예산집행 잔액
홍보리플릿	1,320,000	1,082,500	237,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이해를 위한 리플릿 2,500매 제작 : 984,500원 • 인권교육 도서구매비 : 54,000원 • 인권교육 현수막 제작 : 44,000 	예산집행 잔액

4)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구민의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옴부즈만 운영 사무관리비 3,210만원은 옴부즈만 시행 첫 해로서 자율근무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옴부즈만 3인이 주 2회 출근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운영 결과 평균 주 1.5회 출근하여 옴부즈만 운영수당이 남았고 복합기 대여 예산 편성 후에 전산정보과에서 복합기를 조달받아 잔액발생 잔액 1,497만 7,690원 미집행하고 남은 잔액임.

< 2015년도 옴부즈만 제도 운영실적 >

- 옴부즈만 : 3명(임기 2년)
- 정례회의 개최 : 총 48회(주1회)

○ 주요업무

- 1) 구민 3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고충민원의 조사
- 2) 반복민원 조정 및 중재
- 3)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등

○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 : 29건(조사 7건, 이첩민원 22건) (단위 : 건)

접 수	조사						미조사				
	계	시정 요구	권고	의견 표명	조정	불인용	계	이첩	단순 안내	각하	취하
29	7		2	2	2	1	22	22			

○ 청렴계약 감시·평가실시 : 26건(서면감사 15건, 현장점검 11건)(단위 : 원)

구분	계	감시·평가 실시 내역			감시·평가 조치 결과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시정 요구	권고	의견 표명	특이사항 없음
계	26	17	1	8	11	3	8	4
서면감사	15	6	1	8		3	8	4
현장점검	11	11			11			

○ 검토의견으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60만 8천원과 포상금 집행잔액 50만원은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에도 부조리 신고가 한 건도 접수가 안 되어 집행 잔액이 남게 된 것으로 구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과 구민들이 구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신고 시 불이익 초래 등을 우려하고 또한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마포구 부조리 사전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부조리 발생 민원이 많았던 교통과 청소분야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주민참여 현장 감시단의 참여하에 실시하여 부조리가 발생한 이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부조리 방지를 위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조리 발생을 없애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은 타 부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8만 7,500원은 2014년부터 시작된 일부 인권·시민단체의 성소수자 문제의 정치적·분쟁화로 찬반 중에 있어 현안 과제인 인권위원회 구성 문제 등 해결 추이를 보아

가면서 서울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있게 우리 구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할 것임.

- 옴부즈만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97만 7,690원은 2014.4월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15년도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옴부즈만 3명이 당초 주1회 출근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옴부즈만 시행 첫 해로서 자율근무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운영수당이 남았고, 옴부즈만 운영에 따른 사무실내 복합기 대여 예산을 전산정보과의 복합기를 조달받아 잔액발생 잔액 1,497만 7,690이 미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임
- 또한 마포구 옴부즈만 제도를 2015년도부터 운영하면서 운영 초기에 옴부즈만과 감사부서와의 민원 접수 업무의 중복성과 접수처리 결과 책임성 및 감사를 위한 또 다른 감사부서의 신설은 아니지 등 다소 문제점은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마포구는 재개발이 많은 지역으로 재개발 관련민원과 신축 공사 피해관련 민원 등 주민과 건축 허가자와의 피해 보상 문제 등 구청에서 개입할 수 없는 삼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기 미 해결 민원을 해소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옴부즈만 시행 초기라서 고충민원 처리 건 수가 적은 것은 다소 내 고장 마포 및 마포 I-TV 등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옴부즈만 운영수당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밖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